

政策세미나

UR 妥結 以後 租稅·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

1994. 4

韓國租稅研究院

政策세미나/目次

政策세미나의 概要/ 3

<序>

産業支援制度와 UR協定 妥結의 意義(林周瑩, 李基榮)/ 5

<第1主題>

UR 妥結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林周瑩)/ 11

<第2主題>

UR 妥結에 따른 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李基榮)/ 39

政策세미나의 概要

<4月 27日>

14 : 30~14 : 40 인 사 말 : 박종기 원장

14 : 40~15 : 00 제1주제 : UR 妥結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
발표자 : 임주영 박사(한국조세연구원)

15 : 00~15 : 20 제2주제 : UR 妥結에 따른 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
발표자 : 이기영 박사(한국조세연구원)

15 : 20~16 : 00 종합토론

16 : 00~16 : 15 COFFEE BREAK

16 : 15~17 : 30 종합토론

사회자 : 박종기 원장(한국조세연구원)

토론자 : 김창진 상무(한국무역협회)	이병균 부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남공훈 세제심의관(재무부)	전대주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선우석호 교수(홍익대)	정병수 해설위원(MBC)
손상호 박사(산업연구원)	최홍건 산업정책국장(상공자원부)
윤건영 교수(연세대)	이재국장(재무부)

(가나다 順)

政策세미나/序

産業支援制度와 UR協定 妥結의 意義

林 周 瑩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李 基 榮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 관세장벽의 완화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GATT체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최근 각국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움.
 - 농산물·섬유 등 분야에서 폭넓은 예외조치를 인정하여 왔음.
 -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과 지적재산권 부문을 포괄하지 못함.
 - 1980년대 이후 주요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실효성이 약화됨.
 - EC·NAFTA 등의 거대 지역경제권의 대두로 GATT질서가 문란해짐.

-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된 UR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 해당 관세의 단계적 감축, 최소시장접근에 의한 시장개방
 - 공산품 교역자유화를 위한 관세의 철폐 및 인하
 - 금융·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산업 교역자유화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협정의 체결
 - 수출경쟁력을 왜곡시키는 각종 보조금과 상계관세제도의 허용기준 설정
 - 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반도체칩을 포함한 지적 소유권 보호대상의 확대
 - 반덤핑조치의 적용요건과 제소요건의 강화 및 반덤핑관세에 대한 한시성 부여
 -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기준 강화 및 선별적 적용방지, 각종 회색조치들의 4년내 폐지
 - 세계무역기구(WTO)의 설치를 통한 협정준수여부 감독

- 이 중 보조금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전략은 수출·중화학공업등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는 방식이었으며 최근 개도국들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UR은 이러한 정부지원이 수출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축소·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UR 협정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에 의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상지원·대출·지분참여등의 자금이전과 대출보증등의 채무부담
 - 租稅支援을 통한 세입의 포기
 -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는 민간기관이 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GATT 16조의 보조금규정에 의한 所得 및 價格支援
- UR협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은 금지·상계가능·허용 보조금으로 구분됨.
 - 금지보조금은 수출성가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수입물품 대신 국내물품 사용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으로서 사용이 금지됨.
 - 상계가능보조금은 특정 지역·산업·기업에 제공되는 特定性(specificity)을 지니거나 장기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 타국산업에 피해를 주는 정부지원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상계관세가 부과되거나 보복당할 수 있음.
 - 허용보조금은 特定性이 없는 정부지원 또는 特定性이 있더라도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정부지원임.
- 따라서 UR협정의 일정에 맞추어 현행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야 하지만 정부지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어려움.
 - 일부 지원제도는 성격상 特定性이나 수출입효과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
 - 보조금 협정문안 자체에 대한 해석도 異見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금지 및 상계가능보조금의 개념이 보다 명료화되기 위해서는 特定性 개념에 대한 해석이 중요함.
- 산업지원제도의 개편에 따른 급속한 지원축소는 우리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세지원과 금융지원으로 대별되는 우리나라 산업지원제도는 지난 30년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 지원의 대상·수준·규모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어 온 만큼
 - UR 보조금규정에 의하여 이들이 일시적으로 축소·폐지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산업지원제도 가운데 UR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지원제도를 분류하여 보고 그에 대한 평가 및 개편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봄.

政策세미나/第1主題

UR 妥結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

林 周 瑩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目 次

I. 租稅支援制度의 運用現況

1. 租稅支援制度의 運用 沿革
2. 現行 租稅支援制度

II. UR 補助金協定에 따른 支援制度의 分類

1. 規制對象 補助金의 分類
2. 規制對象補助金의 規模에 대한 評價

III. UR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

1. 國產優待稅率의 廢止
2. 業種制限의 廢止
3. 支援의 全般的 減縮과 限時性 確保
4. 個別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가. 技術·人力開發 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나. 設備投資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다. 中小企業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라. 外貨獲得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마. 기타 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본 연구는 UR 협정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租稅支援制度의 개편방향에 대해 분석함.
 - 이를 위해 租稅支援制度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UR협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될 지원제도를 재분류함.
 - 아울러 국내적 필요성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검토함.

I. 租稅支援制度의 運用現況

1. 租稅支援制度의 運用 沿革

- 租稅支援은 세금의 감면을 통해 기업 및 개인의 세후소득을 증대시켜 특정국가목표에 재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짐.
 - 이를 위해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비과세·저율과세등 직접지원과 특별감가상각·준비금등 간접지원을 사용함.
- 처음에 조세지원은 개별 세법에 의해 운용되었으나 1965년 租稅減免規制法(이하 租減法)을 제정하여 租稅支援의 근거법으로 삼음.
 - 정부수립이후 조세지원이 자원의 유인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자 租稅支援의 과도한 확산을 막고 통일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조감법을 제정함.
 - 조감법에 의하여 모든 租稅支援은 조감법과 同法 第3條에 열거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 지도록 함.
 - 1976년에 이르러 조감법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운용하고 지원이 항구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5년 단위의 限時法으로 운용하게 됨.

-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성장시대에 租稅支援은 성장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특정산업의 육성에 집중됨.
 - 재원조달을 위해서 國內貯蓄과 外資에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여 자본형성에 주력함.
 - 성장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수출산업·중화학공업 등에 감면을 집중함.
- 경제정책의 기조가 안정화로 전환된 1982년 이후에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제도로 전환됨.
 - 중요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
 - 성장잠재력 확충·국토의 균형발전·경제사회 안정기반구축등 3대 국가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제도로 운용방식을 전환함.

2. 現行 租稅支援制度

- <表 I-1>에서 알 수 있듯이 現行 租稅支援制度는 3대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12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제임.
 -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는 준비금·세액공제 등과 모험자본에 대한 지원 등 10종의 지원제도를 위주로 운영
 - 설비투자 지원제도는 경기조절기능을 가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정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등 6종의 지원제도를 위주로 운영
 -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투자준비금·세액공제 등 4종의 지원제도를 위주로 운영
 - 외화획득 지원제도는 외화획득실적에 따른 준비금·특별상각·세액공제와 해외투자자에 대한 지원등 10종의 지원제도를 위주로 운영
 - 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는 기업전환 및 통합을 위한 4종의 양도세감면을 위주로 운영

- 재무구조개선 지원제도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운영
- 외자조달 지원제도는 외화대부이자와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는 기업 및 공장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금·양도세감면 등 6종과 농업 및 농가지원을 위한 지원제도 16종을 중심으로 운영
- 국토개발 지원제도는 공공사업용지 수용을 위한 양도세감면 등 4종의 지원제도로 운영되는데 막대한 지원규모와 부작용으로 논란이 큼.
- 근로자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제도는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저축 등 8종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 국민주거안정 지원제도는 국민주택건설과 사원용주거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세감면·특별상각 등 7종의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 이외에도 광업·축산업 등 특정산업지원,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

<表 I-1> 租稅支援制度의 運用現況

지 원 대 상	지 원 방 법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인력개발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기술기업화 투자세액공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한 주식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융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설비투자촉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중소기업육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출 등 외화획득사업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 수출사업 특별상각, 해외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사업 소득공제, 외국항행사업 특별상각,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해외자원개발 투자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해외점대비 손비인정
산업구조조정	산업합리화 조세특례, 법인전환 양도세감면, 중소기업통합 양도세감면, 중소기업사업전환 양도세감면 세액감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기업재무구조개선	증자소득공제
외자조달지원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등

국토균형발전지원	
농어촌 경제활성화	법인본사지방이전 특별부가세감면,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특별상각,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 세액감면 등,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등,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이전 양도세 등 감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 양도세 등 감면, 위탁영농회사 세액감면, 자경농지 양도세 등 면제, 자경농민양도농지 양도세 면제, 자경농민중여농지 중여세 면제, 영농1자녀 중여농지 중여세 면제,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등 면제, 농협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국토개발지원	공공사업용지 양도세감면, 개발사업시행자 양도세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등 양도세 감면, 간척지 등의 양도 양도세 감면
경제·사회안정기반구축	
근로자재산형성지원	근로자장기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국민주신탁·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 소액가계저축 등 저울분리과세, 근로자증권저축·우리스주취득 세액공제 등, 우리스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국민주택 및 기숙사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국민주거안정지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세감면, 사원용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숙사 특별상각, 기숙사운영사업 세액감면, 임대사업용 국민주택 특별상각
기타	광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광업특별상각, 축산업소득공제, 산림개발소득감면,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감면, 지방세 감면, 군납물품 감면, 기부금의 손금산입,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등

- 운용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의 지원목표별 직접세 감면 실적의 구성비를 추정하여 보면 <表 I -2>와 같음.
- 현행 지원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총 직접세 감면실적의 절반 이상이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임.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는 동 기간 중 평균 18.7%에 이르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사회안정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는 동 기간 평균 23.6%로서 감소하는 추세임.

<表 I -2> 주요 지원분야별 직접세 감면실적 구성비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성장잠재력확충	57.8	55.6	53.9	56.7	55.8
균형발전지원	15.8	16.6	17.2	19.9	23.6
경제사회안정기반구축	26.3	27.3	27.2	21.0	16.2
기 타	0.1	0.5	1.7	2.4	4.4

II. UR 補助金協定에 따른 支援制度의 分類

1. 規制對象 補助金の 分類

- 現行 租稅支援制度가 모두 UR보조금 협정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이 되는 지원 제도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첫째,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대상인 영리기업(Industrial or Commercial Enterprise)에 대한 지원제도로 국한함.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
- 둘째, 지원의 대상이 되는 稅目은 直接國稅로 한정함.
 - 부가세 영세율적용등의 간접세 감면은 제외
 - 직접세 중 지방세 감면도 제외
- 셋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 사업소득 감면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기부금 손금 인정제도와 공공법인 저율과세 등을 제외한 모든 감면을 분류대상으로 함.
 - 양도소득 감면의 경우에는 일반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감면은 제외하고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감면을 분류대상으로 함
 - 금융소득 감면의 경우 근로자재산형성 지원등 일반개인에게 적용되므로 분류대상에서 제외함
- 위 기준에 따르면 現行 租稅支援制度 중 UR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는 45종으로 나타남.

- 구성내용은 기술인력개발지원제도(3종)·설비투자촉진지원제도(5종)·중소기업지원제도(4종)·산업구조조정지원제도(4종)·외화획득지원제도(9종)·재무구조개선지원제도(1종)·농어촌경제활성화지원제도(15종)·기타(4종)임.
- 선정된 지원제도를 금지·상계가능·허용 보조금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UR 보조금협정의 원칙에 따라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을 먼저 선정하고 그외를 허용보조금으로 분류하는 순서를 채택함.
 - 금지보조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수출촉진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와 국산기자재에 대한 優待세율적용으로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 상계가능보조금은 금지보조금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정 지역·산업·기업에 제공되는 特定性을 지니거나 장기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 타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협정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
 - 허용보조금은 금지나 상계가능보조금에 속하지 않고 特定性을 가지더라도 연구개발·지역개발·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등 협정상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
- 성격이 중복되는 지원제도는 규제의 성격이 강한 보조금으로 우선 분류함.
 - 예를 들어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와 같이 허용보조금의 성격(기술·인력개발지원)과 금지보조금의 성격(국산기자재 우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경우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함.
 -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추후 협상여부와 협상능력에 따라 보조금의 분류가 약간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임.

<表 II-1> 租稅支援의 分類

구분 지원대상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
기술·인력개발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촉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 세액공제		SOC 투자 준비금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중소기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산업구조조정		중소기업통합 양도세감면 개인기업법인전환시 양도세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양도세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외화획득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수출사업 특별상각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사업소득공제 외국항행사업 특별상각 해외접대비 전액손비 인정제도		해외투자손실 준비금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 법인세면제
재무구조개선		증자소득공제	
농어촌 경제 활성화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	목장이전 양도세감면 공장이전 양도세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감면 위탁 영농회사감면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공장이전 준비금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공장지방이전 양도세면제 법인본사지방이전 양도세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表 II-1> 租稅支援의 分類(계속)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투자준비금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특별상각 농공단지 입주사업 세액 감면 제주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 타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광업투자준비금 축산업 소득공제 산림개발 소득감면	

- 이상의 기준에 따른 지원제도의 분류결과가 <表 II-1>에 나타나 있음.
- 현행 지원제도 중 금지보조금이 14종, 상계가능보조금이 15종, 즉 규제대상보조금이 총 29종이며 허용보조금이 16종임.
- 금지보조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지원인 외화획득지원제도 7종과 국산기자재에 대해 우대하는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 1종·설비투자촉진 지원제도 3종·중소기업 지원제도 1종·농어촌경제활성화 지원제도 1종·기타 1종임.
- 상계가능보조금은 설비투자촉진 지원제도 2종·중소기업 지원제도 3종·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4종·재무구조개선 지원제도 1종·농어촌경제활성화 지원제도 2종·기타 3종임.

2. 規制對象補助金の 規模에 대한 評價

- UR보조금 협정에 맞추어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表 II-1>에 분류된 조세지원제도가 그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987 ~ 1991년 직접세 감면총액 대비 금지보조금과 상계가능보조금의 비중은 <表 II-2>와 같음.

- 이 기간중 직접세감면총액 중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租稅支援의 총규모는 평균 19%, 상계가능보조금은 평균 18.1%, 규제대상보조금 전체는 평균 3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규제대상보조금 전체는 동 기간중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91년에는 직접세 감면의 40%를 상회하는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表 II-2> 규제대상 租稅支援制度의 규모

(단위: %)

	1987	1988	1989	1990	1991
금지보조금 (A)	26.9	21.2	18.6	13.4	15.1
상계가능보조금 (B)	6.3	11.8	19.9	27.1	25.2
규제대상보조금 (A + B)	33.2	33.0	38.5	40.5	40.3

주 : 비중은 해당항목의 감면합계/직접세 감면총계

- 규제대상보조금 전체의 비중이 직접세 감면의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금지보조금의 비중이 정책적 노력에 의해 계속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가능보조금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임.
- 상계가능보조금 증가의 주된 이유는 <表 II-3>에서 알 수 있듯이 증자소득공제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

<表 II-3> 증자소득공제의 비중 추이

1987	1988	1989	1990	1991
0.51	0.61	0.76	0.87	0.91

주 : 비중은 증자소득공제액/상계가능보조금 총액

- 1993년 세제개편에 따라 규제대상보조금 전체의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o 그동안 증자소득공제는 금융산업이 1980년대 말의 금융산업 대형화정책에 힘입은 대규모 증자로 80% 이상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 o 1993년 세제개편시 증자소득공제 수혜대상에서 금융산업을 제외하여 지원실적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o 따라서 상계가능보조금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규제대상보조금 전체의 비중도 감소할 것임.

- 규제대상보조금의 비중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본다면 이의 축소·폐지에 따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지보조금의 조속한 폐지가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것임.
 - o 금지보조금은 동기간중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비중도 상계가능보조금에 비하여 적으나,
 - o UR이 정한 기간내에 급속히 폐지한다면 단계적으로 축소·개선할 수 있는 상계가능보조금에 비해 해당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表 II-4>에서 알수 있듯이 금지보조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외화획득 지원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큼.

<表 II-4> 금지보조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화획득지원제도의 비중추이

	1987	1988	1989	1990	1991
외화획득지원제도	0.45	0.61	0.71	0.45	0.30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0.48	0.22	0.15	0.41	0.59

주 : 비중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규모/ 금지보조금 총액

- 외화획득 지원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UR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수출지원의 철폐를 통한 공정교역질서의 확립인 만큼 수출지원인 외화획득 지원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하고
 - 외화획득지원제도는 1960년대이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기능 별 지원제도로 전환된 후 지원규모가 크게 하락하였음.
 - 또한 수출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무역금융·연불수출금융 등 금융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90년의 경우 租稅支援이 금융지원의 4.1%, 91년의 경우 2.5%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며
 - UR타결로 인한 각국 무역장벽의 완화로 수출시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되느니 만큼 수출지원의 폐지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임.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침체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데, 한시성을 상실하여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운동과정에서 1982년 1년간 1차실시, 1985년부터 2년간 2차실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3차실시 등 계속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영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대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금지보조금의 조속한 폐지가 그 지원규모나 추세로 볼 때 커다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임.
 - o 오히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등을 개선하여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영구적인 투자촉진수단이 되는 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산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

III. UR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UR 보조금협정에 따른 租稅支援制度의 改編방향은 UR이 정한 규범을 지키면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임.
 - 지원의 급속한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해당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 UR협정에 따라 더욱 한정될 수밖에 없는 감면자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함.
 - 租稅支援制度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세부담의 불평등심화·막대한 세수의 누실·세제의 복잡화·조세의 시장중립성 상실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함.

1. 國產優待稅率의 廢止

- 현행 지원제도는 國產기자재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外產기자재를 이용한 투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수입대체효과를 발생시키므로 UR협정상 금지됨.
- <表 II-1>의 금지보조금 중 외화획득지원제도를 제외한 7종의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이에 속하며, 이들은 국산우대조항만 없앤다면 상계가능보조금 혹은 허용보조금으로 전환됨.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해 지원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 따라서 국산우대를 고수하여 제도자체를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폐지하여 제도를 존치시키고 나아가 확충·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 기계장치산업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국산기자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補助金 外的 方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원론적으로 우리 기계장치산업도 外國産들과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유아기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정부의 고유한 업무이므로 이를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業種制限의 廢止

- 현행 지원제도는 제조업을 국부의 근본이라고 보고 지원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特定性을 부여하는 행위로 UR협정상 타국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상계조치토록 되어있음.
- <表 II-1>의 상계가능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와같은 업종제한 조항에 의하여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면 特定性이 없어져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 현재 제조업은 직접세감면 실적의 50%정도를 수혜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의 발전이 우리경제를 성장시켜온 원동력이고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진제국들의 사례를 볼 때 제조업의 보호·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그러나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산업이 동시에 발전하여야 하며 특정산업의 낙후는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산업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됨.
(예: 유통산업의 낙후)
 - 따라서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자원을 유인하는 기능을 하는 租稅支援의 경우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하여 전산업에 지원효과가 골고루 미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불필요한 산업에 지원이 집중되어 감면자원의 낭비와 세수의 과도한 누실 및 해당산업의 이상과열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함.
 - 특히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별다른 유인효과도 없이 막대한 세수만 누실되고 있으므로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도세 감면제도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부동산 산업 및 부동산임대업등에 악용되어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支援의 全般的 減縮과 限時性 確保

- 단시일내에 지원이 축소·폐지될 경우 우리산업이 처할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원 제도를 가능한한 일정기간동안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축소되어야 함.
 - 租稅支援은 그 속성상 세부담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저해하며 세수의 누실을 초래함.
 - 따라서 가능한한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유인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그러나 租稅支援은 자금지원과는 달리 규모의 파악 및 통제가 어려워 경제성장 과정에서 별다른 견제없이 규모·대상·수준이 팽창되어 왔는데 그 축소조정은 우리 稅制의 당면과제임.
 - 이는 정부의 지원을 축소해나가고 시장기구의 자율성을 확충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과도 일치함.
- 지원제도가 단기간내에 집중적인 유인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시적 운용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함.

- 조감법을 5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매 5년마다 연장운동되므로 사실상 한시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따라서 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UR협정에 의해 폐지되어야 하는 외화획득지원제도는 항구화된 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예임.
-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지원제도별로 日没法(Sun-Set Law)체계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이 폐지되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해야 함.
- 또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 지원의 규모·대상·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4. 個別支援制度의 改編方向

가. 技術·人力開發 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기술·인력개발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UR협정에서도 일정기준하에 허용되는 보조금이므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함.
 - 상당수의 지원제도들이 금지 혹은 규제대상이 되어 해당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현실하에서는 기술·인력개발 지원제도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현행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개발세액공제제도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확충해야 함.
 - 현재 정책당국은 기술개발투자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이 유인효과가 낮을 뿐더러 항시 일정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증가지출분에 대한 지원만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이 자본비용감소에 미치는 실질효과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장기적으로는 UR에 의하여 허용된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원제도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경상지출분에 대한 지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국산우대조향을 없애서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시켜야 함.
- 國産과 外産에 대한 차등지원의 규모도 크지 않으며 外産投資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국산우대조향을 폐지하여 제도를 존속시켜야 함.
-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제도가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기술개발성과의 확실성을 제고하여 주는 별도의 제도마련이 필요함.
- <表 III-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들에 비하여 훨씬 큰 폭으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기술개발투자는 대규모의 자본투입이 필요한 반면 투자수익회임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表 III-1>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조세지원의 국제비교

국가별	비용공제수준	세액공제수준	
		경상지출분	증가지출분
한 국	기술개발준비금 (매출의 3-4% 한도)	없음	직전2년간 평균지출초과분 의 50% 또는 총지출액의 5% (중소기업은 15%)
미 국	없음	없음	직전3년간 평균지출 초과분의 20%
일 본	없음	중소기업만 6% (증가지출분공제와 택일)	67년이후 최고로 지출한 해 의 지출을 초과하는 분의 20% (산출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대 만	없음	없음	없음 (대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특별상각 신설)

나. 設備投資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행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원제도는 국산우대조항과 特定性으로 인하여 모두 금지 혹은 상계가능의 규제대상 보조금이 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을 제거하여 허용보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국산에만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서 설비투자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전환시켜야 함.
-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도 국산우대 조항을 없애야 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속성상 불가피하게 特定性이 내포되어 상계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강구되어야 함.
- 현행 감가상각제도의 상각율·내용년수·잔존가액을 대폭 수정하여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내용년수와 잔존가액을 낮추고 상각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투자재원 형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特定性없이 모든 산업이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어 UR규제에서 벗어나는 장점이 있음.
 - 이 경우에 세수가 급속히 줄어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추정작업이 필요함.

다. 中小企業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租稅支援은 실질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과 같이 매출·수익이 적어 세부담이 적은 부문에 대한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매년 租稅支援制度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26.8% 정도만이 租稅支援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직접세감면 실적에서 법인인 중소기업이 수혜받은 실적도 17%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조세지원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율의 직접적인 인하가 보다 많은 대상이 폭 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임.
- 또한 租稅支援을 축소하고 징수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여 형성된 재원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임.

- 재원을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자금지원하는 것은 UR협정에 의하여 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억제함.
- 대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담보부족으로 인한 대출의 어려움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줄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表 III-2>의 신용보증실적을 보면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0년 이후 보증잔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명제실시이후인 1993년에는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데
- 기본재산은 별로 증대되지 않아 신용보증운용배수가 1992년에는 12.4배에 이르러 추가보증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정상 운용배수가 10이라는 가정하에서 만일 租稅支援의 축소로 5천억원의 재원이 형성된다면 이를 신용보증에 출자하여 5조원의 추가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자금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형성된 재원을 재정투융자사업에 전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 그러나 이경우 지금까지의 利差支援方式에서 벗어나 자금의 可用性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투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表 III-2> 신용보증실적

(단위: 억원, %)

		'88	'89	'90	'91	'92.	'93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A)	32,803	38,565	52,307	65,951	71,599	85,440
기술신용 보증기금	보증잔액(B)	-	2,490	8,644	14,526	12,748	21,767
보증잔액(A+B)		32,803	41,055	60,951	80,477	85,695	107,207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C)		-	4,737	5,783	6,225	6,804	5,789
신용보증운용배수(A/C)		-	6.9	6.7	8.4	9.7	12.4

자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라. 外貨獲得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현행 외화획득지원제도 중 7종의 수출지원제도는 UR협정상 최우선 금지대상이므로 폐지가 불가피함.
 - 이들은 그동안 정책당국의 축소 의지로 그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 또한 우리 수출산업이 租稅支援보다는 무역금융·연불수출금융·무역어음할인 등 금융지원에 크게 의지하여 온 만큼 租稅支援의 폐지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수출산업은 UR타결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출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UR의 수혜자적인 입장임.
- 그러나 폐지는 단계적이고 공표된 일정에 의하여야 함.
 - 수출증대효과는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그 일정도 명백히 공고하여 기업의 적응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마. 기타 지원제도의 개편방향

- 규제대상지원제도인 増資所得控除制度는 지원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세수의 누실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과감히 폐지하여야 함.
 -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1980년대말 이래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증자시 이 제도가 크게 활용되어 막대한 세수의 누실을 초래하여 왔으나
 - 분석결과 증자소득공제의 한계자기자본비용 인하효과는 2%도 안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지원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됨.

- 최근 세제개편시 지원대상 업종에서 금융산업을 배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特定性에 의하여 상계가능 대상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세수를 추가확보하여 증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타인자본경영의 비용인 이자에 비하여 자기자본경영의 대가인 배당소득이 현행 세제에서 당하고 있는 불이익은 종합소득세제의 개편을 통해 별도의 보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규제대상으로 분류되는 産業構造調整을 위한 支援制度는 우리 경제여건상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업종제한을 없애서 전산업에 고루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 하나
 - 지원의 내용이 기업통합과 사업전환시 양도세감면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부작용을 야기시킬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 農漁村 經濟活性化를 위한 支援制度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위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농업을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 이런 의미에서 農特稅도 그 사용용도를 하루빨리 구체화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류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제도도 그 실효성을 재평가하여 정비해야 할 것임.

政策세미나/第2主題

UR 妥結에 따른 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

李 基 榮
(韓國租稅研究院 專門研究委員)

目 次

I. 우리나라 金融支援制度의 現況

II. UR 協定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金融支援制度에 대한 評價

1. 産業合理化(産業構造調整) 支援制度
2. 投資促進支援制度
3. 技術開發 支援制度
4. 輸出支援制度
5. 中小企業支援制度
6. 綜合判斷

III. UR 타결에 따른 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

1.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2. 機能別 支援制度의 改編方向
 - 가. 輸出支援制度
 - 나. 中小企業支援 金融制度
 - 다. 技術開發支援制度
 - 라. 産業合理化 및 投資促進支援制度
3. 綜合的인 政策金融管理體制의 整備

I. 우리나라 金融支援制度의 現況

- 現행의 産業금융지원제도는 金融기관이 상업적인 베이스에 의해 지원하는 一般金融, 용자조건이나 가용성면에서 우대하여 지원하는 政策金融, 그리고 金融기관의 여신운용을 규제하는 義務貸出比率로 구분할 수 있음.
 - 一般金融은 金融기관이 자체조달한 재원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조건으로 기업에 이루어지는 信用을 의미하고,
 - 政策金融은 중앙은행의 재할인, 재정부용자특별회계(및 기금)으로 부터의 용자, 金融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 등을 바탕으로 특정부문에 金利와 可用度면에서 金融기관이 일반상업금융보다 우대하여 공급하는 信用을 의미하며,
 - 義務貸出比率은 金融기관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및 제조업에 공급하도록하는 選別金融制度의 한 형태임.

- UR 보조금 협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産業금융지원제도는 特定性이 있는 일부 一般金融과 政策金融이며, 義務貸出比率은 UR 규정상의 보조금이 아님.

- 現행 産業지원제도는 1986년 기존의 7개 개별産業육성법(기계, 조선, 철강, 비철금속, 전자, 석유화학, 섬유)을 工業發展法으로 통폐합, 특정産業 중심에서 기능별 産業지원 방식으로 전환됨.
 - 동 제도는 産業합리화(産業구조조정), 투자촉진, 수출, 인력 및 기술개발, 중소기업전담 지원 등의 기능별 구분이 가능함(<表 II-2> 참조).
 - 그러나 資本財 및 素材·部品産業과 尖端産業 등 일부 전략産業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産業別 支援(industrial targeting)의 형태로 남아 있음.
(예: 수입대체 소재·부품産業시설자금, 첨단産業육성자금, 기계국산화자금 등)

- <表 II-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전담지원제도20종, 투자촉진지원제도 14종, 기술개발지원제도 9종, 수출지원 6종, 산업합리화 2종 등 총 51종에 이르고 있음.
 - 산업은행의 전원개발자금(한전에 지원되는 자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이 중소기업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종류는 50종임.
 - 이중 무역어음과 장기신용은행의 중장기자금만이 일반금융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정책금융의 형태를 띠고 있음.
- 機能別 支援比重을 보면 중소기업전담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고(66.3%), 수출(17.8%), 투자촉진(12.2%), 인력 및 기술개발(2.1%), 산업합리화(1.4%)의 순서로 지원이 이루어짐(<表 I-1> 참조).
 -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여 그 추이를 보면 수출(1.1%), 투자촉진(3.0%), 인력 및 기술개발(0.3%), 산업합리화(6.8%), 기타(55.1%) 등임.
 - 따라서 전체 금융지원을 純粹 機能別로 분류하여 볼 때 수출(18.9%), 투자촉진(15.2%), 인력 및 기술개발(2.4%), 산업합리화(8.2%), 기타(55.1%)의 순서로 비중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짐.

<表 I-1> 기능별 금융지원제도의 비중 추이

(단위: %)

	합리화	투자촉진	기술개발	수출지원	중 소 기 업					합 계	
					합리화	투자촉진	기술개발	수출지원	기타		
1990	0.05	28.0	1.9	15.3	54.8	1.5	1.2	0.4	0.8	51.0	100.0
1991	0.5	23.3	1.9	16.1	58.1	4.1	1.6	0.2	0.8	51.3	100.0
1992	1.2	11.9	2.3	17.4	67.2	4.8	2.4	0.3	0.8	58.9	100.0
1993	1.4	12.2	2.1	17.8	66.3	6.8	3.0	0.3	1.1	55.1	100.0

- 機能別 支援推移를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투자촉진지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합리화 및 인력·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비중은 미미한 실정임(<表 I-1> 참조).

- 전체 금융지원을 순수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더라도 수출지원 및 산업합리화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촉진지원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술개발지원은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원제도는 中小企業 및 輸出分野에 대한 支援이 優先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임.
- 금융지원은 財源에 따라 金融資金과 財政資金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금융자금은 한국은행의 통화발행과 금융기관이 자체 조성한 자금이며 재정자금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과 기금자금을 의미함.
- 현재의 금융지원을 보면 금융자금이 95%를 상회하고, 재정자금은 5% 미만임 (<表 I-2> 참조).
 - 輸出 및 投資促進은 그 자금의 성격상 금융자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技術(및 人力)開發支援은 투자의 불확실성 및 외부효과가 큰 특성이 있어 재정자금이 재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재정자금의 비중은 50%에 불과함.
 - 中小企業 및 産業合理化資金의 경우에도 재정자금의 비중이 자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때 너무 낮은 편임.

<表 I-2> 금융지원제도의 재원: 재정자금의 비중

(단위: %)

	산업합리화	투자촉진	기술개발	수출지원	중소기업	전체
1990	100.0	3.6	62.9	0	3.3	4.0
1991	3.8	2.8	52.6	0	1.8	2.7
1992	3.1	2.1	43.2	0	1.7	2.5
1993	4.0	2.5	50.0	0	4.6	4.9

II. UR 協定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金融支援制度에 대한 評價

1. 産業合理化(産業構造調整) 支援制度

- UR 협상과정에서 산업합리화지원이 許容補助金の 범주에서 除外되었으며, 특정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화지원은 분쟁의 소지가 큼.
 - 工業發展基金중 산업합리화자금은 재정지원이 있고 섬유·신발 등 특정산업에 低利로 지원되므로 相計可能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産業銀行의 自動化設備資金은 자동화설비투자에 대한 가용성 제공이라는 혜택은 있으나, 그 혜택이 특정산업이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자체선정기준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선정되고, 금리상의 혜택이 주어지는 자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特定性이 없는 허용보조금임.
 - 石油事業基金중 산업구조조정자금은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안됨.

2. 投資促進支援制度

- 투자촉진지원은 산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지원 보다는 특정산업 및 국산 기계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여 다수의 제도가 禁止 내지는 相計可能補助金으로 分類될 수 있음.
 - 산업은행의 機械設備資金, 新規開發機械購入資金은 국산기계에 대한 지원으로 수입대체보조금의 성격이 있어 禁止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고, 계획조선자금과 전원개발자금은 特定性이 있어서 相計可能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石材産業資金은 特定性이 있어 相計可能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국민투자기금의 중화학공업지원자금과 특별설비자금은 신규지원이 없고, 장기신용은행의 중장기자금은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안되며, 나머지 자금은 허용보조금임.

- 산업은행의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特定性이 없는 일반설비자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3. 技術開發 支援制度

-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는 국제규범하에서 적극 장려되는 지원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제도의 대부분은 特定性이 없어 許容補助金의 범주에 속함.
 - 기술개발지원제도는 정부출연사업과 금융기관을 통한 처리용자의 형태로 나누어짐.
 - 정부출연 사업의 경우 産業的 研究(industrial research)¹⁾인 경우 소요비용의 75%, 競争前 開發活動(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²⁾인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 각종 금융기관을 통한 처리용자지원의 경우 特定性이 없으므로 허용보조금에 해당됨.

4. 輸出支援制度

- 현행 우리나라의 수출지원금융제도는 단기금융수단으로서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제도, 중장기금융수단으로서 연불수출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간접적인 수출지원제도로써 수출보험 등이 있음.

- 1) 산업적연구는 새로운 지역의 발견을 위해 동지식이 새로운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물품·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연구 또는 조사를 의미함.
- 2) 경쟁전 개발활동은 산업적연구 결과를(상업적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원형의 창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목적으로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함.

- 이중 무역어음, 연불수출금융, 수출보험제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제도들은 금지보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음.
- 貿易金融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취급액의 30%(비계열대기업)와 50%(중소기업)를 韓銀 再割引金利(5.0%)로 支援함으로써 수출기업에 자금의 可用性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업체의 수출실적 또는 보유 수출신용장 등 輸出成果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禁止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무역금융은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지원이 자금별 재할인 방식에서 최근 총액한도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단기수출금융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사라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음.
- 延拂輸出金融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OECD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引渡後金融에 대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引渡前金融에 대해서는 수출입 은행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輸出産業設備資金은 금융기관 취급액의 60%를 韓銀 再割引金利(5.0%)로 지원함으로써 수혜기업에 혜택을 주고 對應輸出義務를 부과하여 수출성과를 유도하는 한편 수입대체 소재·부품의 국산개발을 지원하여 수입대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海外投資資金貸出중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시장개척자금은 금지보조금 마찰소지가 있으며 주요 물자 등의 확보지원은 허용보조금임.

- 부속서에 예시된 수출보조금의 목록가운데는 장기적인 운용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부족한 정도의 수출관련 보증 또는 보험이 포함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輸出保險制度의 경우 1967년 업무개시 이후 1988년까지 흑자를 보여왔으나 1989~1993 기간중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적자를 財特에서 保全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보험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적자를 기록한 최근 6년을 "長期"로 규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先進國들의 경우 運營收支赤字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특정기관에의 수출보험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논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알려지고 있지 않음.

5. 中小企業支援制度

- 중소기업은 종업원수, 자산규모 등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분류되므로 기본적으로 特定性の 문제가 없음.
 - 정부가 자금배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特定性を 대상으로 한정하면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나,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에서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타 회원국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임.
- 따라서 대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허용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가 되는 제도가 있음.
 - 中小素材·部品 運轉資金支援의 경우 금융기관 취급액의 50%를 한국은행의 再割引金利(5.0%)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8.5%의 금리로 수입대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輸入代替效果가 있으므로 禁止補助金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施策別 特別支援資金중 국산기계 구입자금 수입대체 소재·부품 산업시설에 대한 지원 및 수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지원은 금지보조금 마찰 소지가 있음.

- 有望中小企業育成制度중 소재·부품 국산개발지원 및 수출지원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가능함.
-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공업발전기금중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되는 纖維生産業體合理化資金, 中小企業構造改善資金 등은 상계가능 보조금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94년중에 자금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별 문제가 없음.

6. 綜合判斷

- 현행 금융지원제도 가운데 禁止 혹은 相計可能補助金으로 분류되는 제도는 14종 (금지: 8종, 상계가능: 6종)이며 이들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자금의 비중은 전체의 약 28%로 추정됨(1993년 기준, <表 II-2> 참조).
- 지난 4년간 UR 규제보조금(금지 및 상계가능보조금)이 전체 지원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상승하고 있음(<表 II-1> 참조). 이는 금지보조금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상계가능보조금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데 기인함.

<表 II-1> 규제보조금의 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1	1992	1993
금지 (A)	23.1	20.7	22.4	23.3
상계가능 (B)	2.5	3.9	4.2	4.6
규제 (A+B)	25.6	24.6	26.6	27.9

- 기능별로 볼 때 수출지원(11.0%)과 중소기업전담지원(9.5%)의 경우가 금지 및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제도의 지원비중이 가장 높아, 이 분야에 대한 대책이 특히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貿易金融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며 輸出産業設備資金 역시 중소기업의 이용도가 높고 지원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에 대한 代替支援手段 開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중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되는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지원자금,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자금 등은 許容補助金으로 轉換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産業銀行에서 지원되는 투자촉진자금 가운데 다수(4종)가 特定性 및 수입대체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UR 규범에 맞도록 制度의 改善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UR 기준에 의한 보조금 분류에 있어서 論難의 소지가 있는 制度에 대해서는 보다 嚴密한 檢討가 요구됨.
 - 수출지원제도 가운데 무역금융, 연불수출금융, 수출보험 및 중소기업지원제도 가운데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이 이에 해당됨.
 - 이중 연불수출금융, 수출보험 등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表 II-2> 기능별 보조금의 분류 및 비중

(단위: 억원, %, 1993년 기준)

	금지보조금(1)	상계가능보조금(2)	허용 및 비보조금(3)
산업합리화(A)		- 공업발전기금중 합리화사업자금	- 산업은행의 자동화설비자금
A1, A2, A3/A(A/F)		4.0(0.1)	96.0(1.3)
투자촉진(B)	- 산업은행의 기계설비자금 - 산업은행의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 산업은행의 계획조선자금	- 석재산업자금 - 산업은행의 전원개발자금	- 산업은행의 첨단산업육성자금 - 직업훈련시설자금 - 환경오염방지기금중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중 에너지절약시설자금 - 산업재해예방기금중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산업은행의 정보산업자금 - 산업은행의 공해방지설비자금 - 장기신용은행의 증장기자금 - 일반외화 증장기대출제도
B1, B2, B3/B(B/F)	22.4(2.8)	4.2(0.5)	73.4(9.3)
기술개발(C)			- 특정연구 개발자금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 공업발전기금중 산업기술향상자금 - 석유사업기금중 산업기술향상자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체신부의 기술개발자금 -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및 생산 기술개발자금 -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 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C1, C2, C3/C(C/F)			100.0(2.1)
수출지원(D)	- 무역금융 ¹⁾ - 수출산업설비자금 ²⁾		- 무역어음 - 연불수출금융 - 해외투자자금 ¹⁾ - 수출보험
D1, D2, D3/D(D/F)	62.5(11.0)		37.5(6.6)
중소기업(E)	- 기업은행의 시책별특별지원자금 -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자금 - 중소기업·부품지원자금	- 공업발전기금중 직물생산업체합리화자금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¹⁾ - 협동조합 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 - 중소기업 기술양성자금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자금 - 국민은행의 소기업 지원자금 - 중소기업은행의 소기업 지원자금 - 중소기업 공동판매자금 - 벤처캐피탈사의 부·융자 - 상업어음할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²⁾ -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 ²⁾ -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 공해방지 시설자금 ²⁾
E1, E2, E3/E(E/F)	14.4(9.5)	6.0(4.0)	79.6(52.7)
합계(F)	94,330(23.3)	14,764(4.6)	286,436(72.0)

주: 1)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도임.

2) 1994. 3. 15 부터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음.

Ⅲ. UR 타결에 따른 金融支援制度의 改編方向

1. 制度改善의 基本方向

- UR 보조금 협정에 따라 명백히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폐하거나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해 나감.
 - 철폐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과기간을 활용하여 점진적·단계적 축소방식을 채택하고, 대체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함.
 -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제도는 비특정적 지원제도의 활용, 객관적·중립적 기준의 설정 등으로 特定性を 제거함으로써 허용보조금으로 대체하거나 현행체제를 유지함.

-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UR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대체수단을 개발함.
 -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지원제도는 아직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새로이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수출지원금융은 국제규범에 비추어 향후 계속 문제가 되므로 일반금융과 동등한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확대함.
 - 국산기계 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자 금융은 일반기계구입 자금으로 전환하여 수입대체자금으로서의 特定性を 제거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자유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금리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금리보조보다는 可用度(availability) 위주로 지원하고,
 - 재원조달은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은행 자체자금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자금의 비중을 확대해 감.

2. 機能別 支援制度의 改編方向

가. 輸出支援制度

- 향후 수출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短期金融制度 경우 현행 체제내에서의 개선도모하고,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수출산업설비금융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면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이 허용되는 연불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貿易金融은 무역업체의 자금가용성을 높여 수출촉진의 효과가 있으며 상당수의 무역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원효과가 매우 큰 단기 수출금융제도로써 1988년 계열그룹 대기업에 대한 공급이 중단되면서 中小企業 金融支援의 대표적인 手段으로 활용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상업어음재할인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전형적인 ‘短期’ 流動性 供給手段으로서 일반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화관리에의 부담이 적은 편임.
 -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마찰의 소지가 있으나, 당분간 이 제도를 개선하여 계속 存置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무역금융을 準商業어음化하여 상업어음과 함께 총액한도 재할인 대상으로 하되, 재할인의존도의 축소에 대비하여 상업어음과 하계 表紙어음化하여

은행의 일반대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表紙어음의 업무취급을 현행의 단자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허용하며, 동 어음의 일반대출금리를 자유화함으로써 진성어음의 소화와 유통을 촉진하도록 함.
- 輸出産業設備資金은 중앙은행 취급 정책금융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1994. 3. 15)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등과 통합되어 '中小企業基盤造成資金'으로 운용되면서 그 재원의 반을 재정으로 부터 지원 받는 체제로 전환됨.
 - 그러나 수출 및 수입대체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대상 선정 기준은 禁止補助金으로 분류되어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설비투자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代替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延拂輸出金融은 GATT 규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公的輸出信用으로서 용자조건이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경우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향후 연불수출금융의 지원확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찰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조건을 국제적 규범에 맞게 調整할 필요가 있음.
 -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引渡前金融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금리를 적용하고, 연불기간을 수출대상국별로 규정하고, 중·고소득국에 대한 상환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고, 용자조건중 원자재 의존률 또는 국산기자재율 요구조항 등을 輸入抑制措置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요구됨.
- 延拂輸出金融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연불수출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고 실물부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원대상종목을 일반적으로 요건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包括規程化하고,
 - 수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연불수출금융 제공 시 輸出保險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대규모 자본재거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체제를 중소기업 자본재 거래에도 적합하게 용자조건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中小企業의 연불수출 금융제도 活用度를 提高하며,
 - 소요재원의 재정자금 의존도를 제고하고, 대외경제협력자금과의 연계지원체제를 수립하여 연불수출금융업무의 補完性을 確保해 나갈 필요가 있음.
- 輸出保險은 금융 및 세제상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 강화에 따른 한계성을 극복하는 代替手段으로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間接的인 輸出支援制度로서, 보험인수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수출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活用率은 3% 내외의 수준으로,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 수출보험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보험기금 적립액의 확충이 필요하며, 基金擴大는 정부출연금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소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보험요율, 보상을 등을 差等化하고, 포괄 보험제도의 활성화, 보험요율체계의 개편, 신보험상품의 개발 및 도입 등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나. 中小企業支援 金融制度

- UR 타결에 따라 금지 혹은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일부 자금의 特定性을 제거하여 허용보조금으로 전환됨.
 -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자금중 국산기계구입자금과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시설자금은 일반시설자금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은 일반운전자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유망 중소기업 육성제도 중 소재·부품 국산개발 및 수출지원을 일반적인 유망 중소기업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特定性을 없애도록 함.
 -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현행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술개발자금으로 전환함.
-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인 중소소재·부품 운전자금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야 할 것임.
- UR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요인이외에도,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 일련의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금융상의 애로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신용과 담보부족으로 인한 자금의 接近性(accessibility)은 자금의 可用性(availability)보다 더 큰 문제로 판단됨.
- 따라서 信用대출의 확대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신용대출의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信用保證制度를 擴充하는 것임.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財政出捐을 擴大하고, 실효성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음.

- 금융기관과의 연계보증제도 도입, 보증료의 차등적용, 신용평가기능의 확충 등 信用保證業務의 改善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용대출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의 설정,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을 반영, 부실거래자에 대한 제제강화, 기업회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기업정보 공시제도의 확충,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육성 등 제도 및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됨.

다. 技術開發支援制度

- 향후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단히 미미한 실정임.
 - UR 협정에서도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은 許容補助金으로 분류되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不確實性이 높은 기술개발투자의 특성상 민간금융기관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고 財政資金을 活用하여 특수은행(개발기관) 및 기술개발전문기관을 통한 지원과 정부의 직접출연에 의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자금의 성격상 전용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기술의 기술개발 단계별로 연계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을 제도의 종류는 많으나 수혜대상 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임.
 - 따라서 정부는 직접출연을 통해 유사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産業合理化 및 投資促進支援制度

- 산업은행의 대출제도 가운데 기계설비자금,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등 국산기계의 수요를 장려하는 제도는 기계구입자금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발전소 건설 지원을 위해 대출대상을 한국전력으로 한정된 산업은행의 전원개발자금, 석재산업자금, 공업발전기금 중 합리화사업자금 등은 자원의 特定性이 있어 상계가능보조금으로 분류되나 현행의 체제를 유지 혹은 허용보조금 형태로 전환할 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첨단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첨단사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양산업에 대한 합리화지원중 영업손실을 위한 지원은 1회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綜合的인 政策金融管理體制의 整備

- 융자성 기금을 포함한 재정용자와 금융기관의 금융자금에 의한 정책금융을 연계하여 운용하고 그 적용기준을 확립함으로써 財政과 金融의 役割 分擔을 명확히 하도록 함.
 - 財特과 融資性 基金이 수행하는 정책금융 규모는 금융기관에 의한 정책은행 및 공급액의 60% 수준(1992년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同 資金과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개발기관 포함)의 정책자금 간에 영역구분 기준이 애매함.

<表 III-1> 재정용자와 정책금융공급액
(各年度 純增基準, 억원)

	財政融資			총정책금융 공급액 ¹⁾ (C)	B/C(%)	A/C(%)
	財特	용자성기금 (A)	계 (B)			
1990	14,409	54,068	69,477	87,880	77.9	61.5
1991	10,576	60,179	70,755	90,520	85.1	66.5
1992	11,066	53,981	65,047	107,100	60.7	50.4

주: 1) (특정 年度의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의 정책금융 말잔) - (前 年度의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의 정책금융 말잔)

- 통화증발에 미치는 효과를 보더라도 재정용자는 통화금융기관 밖의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므로 통화에 중립적인 반면, 한은 再割引對象 정책금융의 경우 통화증발을 초래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음.
 - 또한 용자성 기금 등에 의한 재정용자와 금융자금에 의한 정책금융간에는 용자 조건이나 특정부문 우대지원면에서 差別的 基準이 없음.
 - 政策金融의 문제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책성 신용공급이라는 협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신용행위라는 概念의 再定立을 통해 재정과 금융간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산업지원 금융제도는 종류가 많고 동일한 목적의 자원금융이 과도하게 다기화되어 있어 多部門·少額支援體制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주체가 금융기관·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자금이라도 지원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이 少額으로 중복·多岐化되어 있어 지원금융의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등 그 效率性이 떨어지고 있음.
 - 또한 많은 基金의 경우 특정 제도가 複數의 機能을 수행함으로써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이 중복지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후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예1) 기술개발관련 중소기업금융의 경우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의 기술창업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 창업투자자금, 기술개발지원기관의 신기술사업지원자금 등.

예2) 공업발전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 국민투자기금의 기술개발자금, 석유사업기금의 산업기술향상자금 등.

예3) 국산기계구입지원을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국산기계구입자금, 산업은행의 기계설비자금 및 신규개발기계구입자금, 중소기업은행의 시책별 특별지원자금의 국산기계구입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및 중소기업·부품지원자금중 국산기계구입자금 등.

◦ 이와같은 문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에서 두드러지는데, 정부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체제를 창업, 설비투자, 기술 및 인력개발 등의 기능별로 단순화하여 중소기업금융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원효과가 유사한 중소기업자금의 용자조건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자금의 조달과 배분 및 정책금융의 전달체제 정비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단일의 주체가 관장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정책금융조정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임.